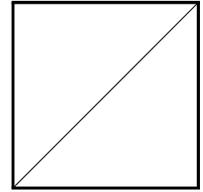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6 호	보 고 사 항
보 고 연 월 일	2022. 2. 23. (제 4 차)	

코로나19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 제출
지연 관련 처리방안 보고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전

제 출 자	위원장 도 규 상
제출 연월일	2022. 2. 23.

1. 보고주문

「코로나19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 제출 지연 관련 처리방안」을 별지와 같이 보고한다.

2. 보고이유

일부 기업 및 감사인들로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외부감사가 지연되는 등의 사정으로 재무제표(연결 포함),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등의 기한내 제출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재무제표(연결 포함), 사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미제출(지연제출) 등은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위반에 해당하나 코로나19라는 천재지변에 준하는 불가피한 외부사정에 의한 것임을 고려하여 향후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통해 행정제재를 면제하는 방안을 보고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회사의 주요사업장(자회사 등 포함)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국가에 있거나 동 국가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고, 2021년 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 또는 외부감사 등이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지연된 경우 또는 감사인이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회사·감사인 사무실 폐쇄 등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비대면 감사절차 수행 등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회계연도 외부감사를 기한 내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재무제표(연결 포함)·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의 기한내 미제출 사유를 감독당국에 미리 알리고, 감독당국의 검토 및 향후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통해 관련 행정제재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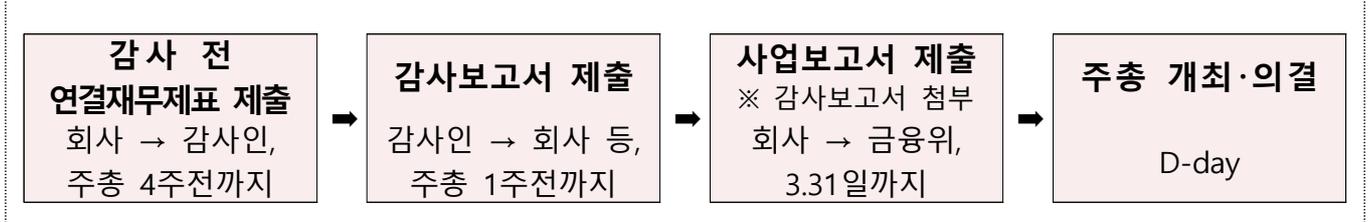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규 : < 붙임 >

코로나19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 제출 지연 관련 처리방안 보고

1. 문제점

<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절차(12월말 결산법인 기준) >



□ '20년~'21년중, 증권선물위원회는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사업보고서 등의 기한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제출기한을 연장

※ '20.3월^{연간}, '20.5월^{1분기}, '20.8월^{반기}, '21.3월^{연간} 4차례 시행 → 총 116개 회사 및 46개 감사인에 대해 제재 면제

□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12월 결산법인들이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상황

* 주요국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수(Worldometers, 2.17. 기준)
: (한국) 9.3만명 (일본) 9.1만명 (미국) 10.3만명 (영국) 5.2만명 (인도) 2.6만명

○ 그러나, 일부 회사의 경우 코로나19로 결산·외부감사 등이 지연되어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등의 작성 및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울 수 있음

< 사업보고서 등 제출 지연시 제재내용 >

- (자본시장법) 주권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통상 3.31.)에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해야 함
 - 사업보고서 미제출·제출지연* 또는 중요사항 거짓기재·공시누락의 경우, 고발·통보, 과징금 부과, 증권발행제한 등 제재 대상(조치기준상 원칙적으로 과징금 부과대상)
 - * 상장사의 경우, 거래소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법정기한 10일 경과시)도 가능
- (외부감사법) 회사는 정기주총 6주 전까지 재무제표(연결 4주전)를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하며, 위반시 고발·통보, 감사인 지정* 등 제재 대상
 - * 「외부감사규정」 조치 기준에 따라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경고, 주의 조치
- 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총 개최 1주 전까지 회사 등에 제출해야 하며, 위반시 고발·통보, 감사업무 제한 등 제재 대상

2. 처리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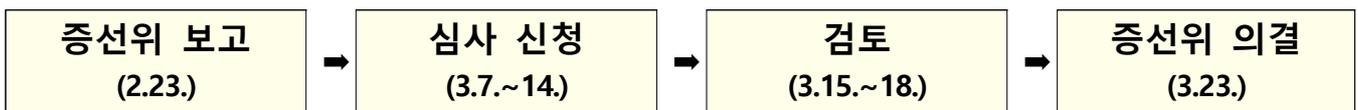
(1) 기본 방향

- 재무제표(연결 포함)·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 미제출·제출지연은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관련 규정 위반에 해당
- 그러나, 현 상황은 코로나19 확산 등 불가피한 외부사정에 의한 것임을 고려하여 증선위 의결을 통해 행정제재를 면제하는 방안 추진

< 행정제재 면제 주요 근거규정 >

- ①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별표2) 5. 과징금의 감면
위반행위의 내용이나 정도에 비추어 과징금이 현저히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증선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다.
- ②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6항) 증권선물위원회는 양정기준에서 고려되지 아니하거나 양정기준과 다르게 고려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정기준과 달리 결정할 수 있다.
(제27조 제7항) 증권선물위원회 및 감리집행기관은 피조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치등을 하지 않을 수 있다.
5. 위법행위에 천재지변, 재난, 그 밖에 책임이 없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2) 처리 절차



- ① (증선위 보고)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처리방안을 증선위에 보고(2.23.)
※ 보고 완료 즉시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처리방안에 대한 보도참고자료 배포 예정
- ② (신청) 코로나19에 따른 결산 지연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3.31.) 내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회사·감사인이 금감원 또는 한공회에 심사 신청

< 신청 및 심사 방법 >

- ① (심사기관) 금감원 →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한공회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미적용 & 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
※ 그 외 법인은 주주총회 개최일 변경을 통해 애로 해소 가능
- ② (신청인) 회사 또는 감사인이 신청
- ③ (첨부서류) 회사 신청시 감사인, 감사인 신청시 회사의 제재면제 신청에 대한 의견서

- 투자자 보호 및 관련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신청기간을 제한 (3.7.~3.14.)하고 신청사실을 신속하게 공개*

* ① 금감원·한공회 홈페이지 신청회사 명단 게시, ② 해당 회사의 신청사실 거래소 공시

-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이 지연되는 회사는 개별 심사하여 제재 수준 결정(일괄심사 후 제재 면제대상 아님)

③ (검토) 금감원·한공회에서 다음의 면제요건 충족 여부 검토*

➔ (1)~(2)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제재 면제 대상에 해당

- * ① 특례 악용 가능성이 있는 상장사(예: 감사인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 중 회사)는 거래소와 협조하여 신중검토
- ② 감사인의 경우, 비대면 감사절차 수행 여부 등을 점검(금감원·한공회는 '20.12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비대면 감사절차 실무가이드' 배포)

<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요건 >

(1) 회사의 결산일이 2021년 12월 31일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① (회사) 주요사업장(자회사 등 포함)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국가에 있거나 동 국가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고, 2021년 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 또는 외부 감사가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지연된 경우
- ② (감사인)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회사·감사인 사무실 폐쇄 등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감사인이 비대면 감사절차 수행 등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회계연도 외부감사를 기한 내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 ③ ①, ②에 준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의결) 금감원·한공회 심사 결과를 증선위에 상정하여 제재면제 의결(3.23.)

- 제재 면제 대상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22.1분기 분기보고서 제출기한(5.16.)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함 (필요시 개별 연장)

* 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닌 법인(한공회 심사대상)은 본래 제출기한인 5.2.에서 45일 연장된 6.16.까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

② 주권상장 외국법인은 본래 제출기한인 5.2.에서 '22.1분기 분기보고서 제출 기한(5.31.)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

3. 향후계획

3.7.~3.14. 제출지연 우려기업 제재면제 신청

3.23. 행정제재 면제 안건 증선위 의결

※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받는 상장사의 경우, 거래소는 상장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지정 등을 연장기한까지 유예

4. 안건 공개 여부 : 공개

관계 법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매출) ① 제119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발행인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재무상태에 관한 사항의 공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19조제6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제159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① 주권상장법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다)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⑦ (생략)

제164조(조사 및 조치) ① (생략)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증권의 발행, 그 밖의 거래를 정지 또는 금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1. 사업보고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업보고서등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제165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①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법인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제출의무를 면제하거나 제출기한을 달리하는 등 그 적용을 달리할 수 있다.

②~④ (생략)

제429조(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① ~ ② (생략)

③ 금융위원회는 제159조 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 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중에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형성된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의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0분의 10(20억원을 초과하거나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이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생략)

2. 제159조 제1항, 제160조 또는 제161조 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④ ~ ⑤ (생략)

제4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7. (생략)

28. 제159조, 제160조 또는 제16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분기보고서나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9. ~ 63. (생략)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35. (생략)

36. 제130조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37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매출) ① 법 제1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4. (생략)

5. 다음 각 목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매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것. 다만, 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제17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외국법인등, 모집 또는 매출한 증권의 상환 또는 소각을 완료한 법인 및 제362조제8항에 따른 보증사 채권만을 발행한 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대차대조표와 그 부속 명세서

나.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 명세서

다.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라.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법인만 해당한다)

②~⑥ (생략)

제176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① (생략)

② 외국법인등(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보고서를 법 제159조제1항 본문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고,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를 법 제160조 전단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③~⑨ (생략)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

제25조(과징금의 부과) ① 금융위는 위법행위가 법 제429조 또는 법 제429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위법행위에 대해 법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또는 제178조 위반의 사유로 검찰 수사가 개시되거나 공소가 제기됨에 따라 각 급 검찰청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법 제

429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위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④ 금융위는 별표 제2호에서 정한 기준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별표 제2호] 과징금 부과기준

1.~4. (생략)

5. 과징금의 감면

(1) ~ (4) 생략

(5) 위반행위의 내용이나 정도에 비추어 과징금이 현저히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증선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징금을 감면할 수 있다.

6.~10. (생략)

제34조(조치기준)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는 별표 제3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고 기준과 달리 조치할 수 있다.

1. 당해 위법행위의 시정 또는 원상회복여부

2. 유사사건에 대한 조치와의 형평성

3. 당해 조치가 향후 증권·파생상품시장참여자에게 미칠 영향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제6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① (생략)

②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기간 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지 못한 경우 사업보고서 공시 후 14일 이내에 그 사유를 공시하여야 한다.

- ④ 주권상장법인인 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 기한·방법·절차 등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⑤ 주권상장법인인 회사가 제4항에 따른 제출기한을 넘길 경우 그 사유를 제출기한 만료일의 다음 날까지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는 해당 사유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3조의 방식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 ⑥ (생략)

제11조(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3개 사업연도의 범위에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11. (생략)

12. 그 밖에 공정한 감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② (생략)

제23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① 감사인은 감사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회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회사가 사업보고서에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와 같은 법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사인이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 ⑦ (생략)

제29조(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회사에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제6조, 제1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2조제2항, 제22조제6항 또는 제23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 ⑦ (생략)

제42조(벌칙) 「상법」 제401조의2제1항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나 제20조제4호에 따른 감사업무와 관련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및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 8. (생략)

제44조(벌칙) 「상법」 제401조의2제1항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략)
3. 제23조제1항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3조제6항을 위반하여 감사인의 명칭과 감사의견을 함께 적지 아니한 경우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8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①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1. 재무제표: 정기총회 개최 6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 정기총회 개최 4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 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라 한

다) 중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 후 70일 이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이하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이라 한다) 이후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재무제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6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4주 전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

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 제1항제2호나목의 기한

③ ~ ⑥ (생략)

제14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을 받는 회사) ①~⑤ (생략)

⑥ 법 제11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회사. 다만,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위반 사항으로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제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무제표 제출 및 공시
나.~차. (생략)

4.~6. (생략)

제27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①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는 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 정기총회 개최 1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가. 재무제표: 제1호의 기한

나. 연결재무제표: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은 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경우로서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제외한다)를 감사하는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1주 전(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증권선물위원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해야 하는 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재무제표: 정기총회 종료 후 2주 이내(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관리인에게 보고한 후 2주 이내)

2. 연결재무제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 제1호의 기한. 이 경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와 동시에 제출한다.

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회사: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

④ ~ ⑧ (생략)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

제26조(조치의 유형)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가 법령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2. 임원의 6개월 이내 직무정지

3. 1년 이내의 증권 발행제한

4. 3개 사업연도 이내의 감사인 지정

5. 경고

6. 주의

7. 시정요구, 각서(회계처리기준을 성실하게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출요구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②~⑧ (생략)

제27조(조치등의 기준) ① ~ ⑤ (생략)

⑥ 증권선물위원회는 양정기준에서 고려되지 아니하거나 양정기준과 다르게 고려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정기준과 달리 결정할 수 있다.

⑦ 증권선물위원회 및 감리집행기관은 피조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4. (생략)

5. 위법행위에 천재지변, 재난, 그 밖에 책임이 없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상법 】

제447조(재무제표의 작성) ① 이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 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의 이사는 연결재무제표(聯結財務諸表)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48조(재무제표 등의 비치·공시) ① 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전부터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449조(재무제표 등의 승인·공고) ①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생략)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

제47조(관리종목지정) ① 거래소는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통주권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1. 정기보고서 미제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 13. (생략)
- ② ~ ④ (생략)

제48조(상장폐지) ① 거래소는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통주권을 상장폐지한다.

1. 정기보고서 미제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해당 사업보고서를 그 법정 제출기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나. (생략)
 2. ~ 14. (생략)
- ② ~ ④ (생략)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

제53조(관리종목) ① 거래소는 보통주식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통주식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1. ~ 5. (생략)
 6. 정기보고서 미제출: 공시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7. ~ 13. (생략)
- ② ~ ⑧ (생략)

제54조(형식적 상장폐지) ① 거래소는 보통주식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보통주식을 상장폐지한다.

1. ~ 8. (생략)

9. 정기보고서 미제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 미제출로 제53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공시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나. 최근 2년 동안 3회 이상 공시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제53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해당 사업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 ~ 14. (생략)

② ~ ⑤ (생략)

【 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 상장규정 】

제28조(상장의 폐지) ① 거래소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상장을 폐지한다.

1.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 13. (생략)

② ~ ④ (생략)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소관부서	공정시장과	회계심사국 회계관리국 기업공시국 공시심사실	연구본부
연 락 처	02-2100-2691	02-3145-7712 02-3145-7975 02-3145-8476 02-3145-8424	02-3149-0354